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5/2563 호

관련된 ISO 조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시스템(e-SIO)을 사용하는 기타의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결과 보고 절차

투자촉진을 받는자나 기타 상응하는 부분에 있어 명시된 조건을 따라 ISO 또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결과 보고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1항, 13항, 20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의 이사회는 권한에 따라 ISO 또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결과 보고 절차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함

1. 위의 안내 사항은 ISO 조건 또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결과 보고 절차를 투자 촉진 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출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2. 위의 안내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 시스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ISO 조건 또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결과 보고 절차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따르게 됨
3. 위의 안내 사항중에 위원회에 지정한 관련된 모든 규칙, 규정, 안내사항 및 기타 내용등에 본 안내 사항과 상반되거나 일치하지않는 경우 본 안내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함
4. 이 안내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촉진위원회를 의미함  
"서비스 받는자"는 투자촉진 증명서에 명시된 품질 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한 자로서 투자촉진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며 받는자를 의미함  
"품질 시스템 인증서"는 ISO 9000 또는 ISO 14000 또는 기타 동등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품질 시스템 인증서를 의미함  
"보고서 양식"은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항목 및 정보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ISO 조건을 준수하는 보고서 양식을 의미함  
"시스템"은 전자시스템(e-SIO)를 이용한 ISO 조건을 준수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5. 전자시스템(e-ISO)를 이용한 ISO 조건을 준수하는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과 절차를 지니고 있음

- 5.1 서비스를 받는자는 ISO 조건을 준수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 및 위치등이 투자측진 증명서에 명시된대로 품질 시스템 인증 획득 조건등이 언급된 품질 인증성의 범위가 있어야 함
- 5.2 서비스를 받는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신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결과가 고려되어 통보가 됨
- 5.3 서비스를 받는자는 문서 추적 시스템(doc tracking)에 사용된것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이용해 ISO 조건을 준수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 시스템에 접속할수 있음
- 5.4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전자 시스템에 따라 ISO 조건을 준수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취함
- 5.4.1 서비스 제공자는 5.6항에 따른 제출된 보고서를 고려 할 것임
- 5.4.2 정해진 법률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출된 내용을 제출 또는 보유 할것을 요구하는 경우와 원본 문서로 다음의 규칙에 따른 전자상의 제출 또는 보유 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른 원본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관을 하는것으로 간주함
- (1) 메세지 생성이 완료된 이후의 메세지에 대한 전자 데이터는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함
- (2)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표시할수 있는데
- (1) 항목에 따른 진술의 정확성은 다음의 완전성과 부재를 고려하는데 메세지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평소와 같은 메세지를 전달, 보관 또는 표시하며 이는 텍스트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인증 또는 추가 기록과 변경사항이 일어날수있는 부분들을 제외함
- 5.4.3 법률에 따른 5.4.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문서 또는 텍스트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또는 메세지를 전자상의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1) 이러한 전자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 재사용의 의미로 전자 데이터에 접근할수있고 사용할수 있음
- (2) 생성, 전송 또는 수신된 메세지를 올바른 형태로 표시하여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전자 데이터를 보관할수있음

(3) 전자 데이터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날짜와 시간(있는 경우)은 보내는 곳, 받는 곳을 나타내는 내용등을 보관할수 있음

- 5.5 서비스를 받는자는 시스템에 로그인(login)을 할 경우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정보의 진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자 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한 잘못이 없으며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음
- 5.6 신고를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자는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 첨부을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함
- 5.7 ISO 조건을 준수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뒷받침하는 문서 및 증거는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경우 서비스를 받는자는 해당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를 해야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증거 및 증거 자산으로 보관하고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는자는 가능한 빨리 해당 정보와 문서를 전달해야함
- 5.8 서비스를 받는자가 ISO 조건을 준수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승인을 하지 않는한 ISO 및 해당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게 되며 해당 정보는 완전한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을 할수 없음
- 5.9 전자 데이터 전송의 보안을 위해 서비스를 받는자는 사용자이름(username) 과 비밀번호(password)를 유지하며 운영 상태를 제어할수있도록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허가없이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주거나 다른사람의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도용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야함
- 5.10 서비스를 받는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려야함
  - 5.10.1 서비스를 받는자가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알고있는 경우중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의 소유자가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의 분실, 손실, 변경, 도난당했을 경우
  - 5.10.2 서비스를 받는자가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알고있는 경우중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의 소유자가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한 데이터의 분실, 손실, 변경, 도난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서비스를 받는자가 1번 항목의 데이터중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나 이를 실행 하기 전에 긴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수있는데

팩스로 우선 상황을 전달한후, 3일의 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항목에 대해 통지를 하며 1번 항목에 대한 통지를 받은후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다시 발신한후 서비스를 받는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는 5.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준수함

5.11 전자 데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만 서비스 제공자가 응답을 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정보를 수신한것으로 간주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제출된 전자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이는 1번 항목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에 대한 답이나 보증으로는 간주되지는 않음

5.12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된 전자 데이터의 수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됨

5.12.1 기술 데이터에 사용된 전자 데이터의 표시가 추가 수정이 되어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에 이상이 생겨 제출이 되는 경우

5.12.2 해당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된 전자 데이터를 전송시 수신한 전자정보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것으로 판명되어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데이터 수신을 거부한다는 것을 서비스를 받는자에게 전자 데이터 또는 기타 형식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

5.13 전자 데이터의 송수신은 장치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를 받는자의 운영자가 전송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누르는 순간 서버 컴퓨터에 시간이 표시되며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순간의 호스트 컴퓨터를 수신 시간으로 간주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는 제공자의 데이터가 연결된곳으로 간주됨

5.14 5.13항목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문서를 받은 시간과 날짜를 공식 시간과 날짜로 간주하게 되며 이는 전자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서비스를 받는자가 ISO 조건을 준수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날짜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간은 투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을 하기 위한 시간이 정해지며 이는 보

고서 제출 마감일을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과 전자 데이터에 입력을 하게 되고 ISO 조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이 해당됨

- 5.15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된 시스템의 오류 혹은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는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5.16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받는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기준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고서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포기를 할수있게됨
  - 5.17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에 대한 정보 수신을 중단하여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를 받는자가 관련된 사항의 보고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여 방지를 하며, 서비스를 받는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는 ISO의 형식에 따름
6. 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0년 11월 30일 까지의 원래 형태의 서비스를 취소함
  7. 위와 관련된 사항에 의해 판결을 내릴수 없는 경우 투자촉진위원회 사무총장이 관련 판결을 내리게 됨

2020년 10월 28일에 고시

Duangjai Asawachintachit

(Ms. Duangjai Asawachintachit)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